

위원회 규정

·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54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55
· 윤리위원회 규정	56
· 최고자문위원회 규정	57
· 재무위원회 규정	58
· 기획정책위원회 규정	59
· 소통위원회 규정	60
· 회원관리위원회 규정	61
· 전기공학교육위원회 규정	64
· 편집위원회 규정	65
· 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66
· 국문논문지 편집위원회 규정	67
· 영문논문지 편집위원회 규정	68
· 학술위원회 규정	69
· 연구조사위원회 규정	70
· 국제위원회 규정	71
· 산학협동위원회 규정	72
· 전기기술표준 및 용어위원회 규정	73
· 여성과학기술위원회 규정	74
· 전기에너지위원회 규정	75
· 전기역사위원회 규정	76
· ICEE 한국위원회 규정	77
· ICEMS 한국위원회 규정	78
· EMTP 한국위원회 규정	79
· CMD 한국위원회 규정	80
· APAP 위원회 규정	81
· 대한전기학회 교육원 규정	82
· 장학생 선정 심의위원회 규정	83
· 기술협의회 규정	84
· KIEE CEO 클럽 규정	85



사 단 대 한 전 기 학 회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상별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포상과 타 기관의 상훈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및 회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2.10.11, 2012.03.09, 2021.11.12 개정]

제2조(책임) ① 위원회는 학회 상에 대한 품위를 높이는 책임과 제출된 서류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② 위원회는 학회의 포상의 정책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수상자 선정의 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기능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학회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필요시 회원에 대한 징계 기능을 갖는다. [2012.03.09 개정]

제3조(의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 상의 수상자 선정 [2021.11.12 개정]
2. 상장 및 상패의 규격
3. 부상 및 상금의 내용
4. 학회 상의 별도 명칭 선정 [2021.11.12 개정]
5. 타 기관의 상훈 후보 추천 [2021.11.12 개정]
6. 회원에 대한 징계 [2012.03.09 개정]
7. 기타 학회 내의 상벌에 관한 사항 [2012.03.09 개정]

제4조(구성) 위원회는 학회의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이사과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차기회장이 된다. 위원회의 집행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회 담당 총무이사가 된다. [2021.11.12, 2021.11.12, 2023.12.08 개정]

제5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이 상 수상자의 선정은 전체 위원의 찬성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021.11.12 개정]

제6조(심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받아야 하고, 상벌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출받은 서면자료에 의하여 서면만이 행할 수 있다. 상벌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 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수상후보자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추천자로부터 보충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2012.03.09., 2023.12.08 개정]

제7조(이의제기) 징계 대상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2.03.09, 2021.11.12 개정]

제8조(회의의 기록 처리) 위원회의 회의의 기록은 위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장 제13조 제①항 제1,2,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과 규칙 제5장 제9조 제①,②,③항에 의거 평의원 선출에 관한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설치) 위원회는 선거 기간에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선거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2021.11.12 개정]

제3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021.11.12 개정]

1. 차기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 관리
2. 차기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
3. 직선 평의원 후보 선정 초안 작성
4. 직선 평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
5. 선거 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 수립 및 운영

제4조(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기회장, 부위원장은 총무이사, 기획 정책이사 중 각 1명, 위원은 이사와 평의원 중에서 선정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2021.11.12, 2023.12.08 개정]

제5조(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12 개정]

제6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21.11.12 개정]

제7조(위원의 권한 및 의무) 선거관리 위원은 제3조의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제3조에 규정된 선거관리 업무를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차기회장 및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회원의 연구 및 출판, 기타 윤리(이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②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윤리에 관한 강령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3조(의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윤리 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윤리에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심의절차 및 제재를 규정하는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연구 부정행위

4. 기타 학회 내의 윤리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회 총무이사, 편집이사 각 1인씩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부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위원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2012.03.09, 2021.11.12, 2023.12.08 개정]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012.03.09 개정]

제5조(회의) ①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021.11.12 개정]

②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12.03.09, 2021.11.12 개정(단서조항 삭제)]

③ 위원회 의결 사항 중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징계 수위 등을 학회 내의 상벌심의위원회에 회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하고, 표절여부 및 연구조사 결과 통보 등 그 밖의 사항은 회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 [2012.03.09 개정]

제6조(심의) 윤리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고,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서면에 의하여서만이 행할 수 있다. 윤리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 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심의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관련자로부터 보충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7조(배상책임) 학회 국문논문지, 영문논문지 및 간행 출판물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 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저자(투고자)에게 있으며, 학회의 배상책임은 일체 없다. [2021.11.12 신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최고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학회가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 운영의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
2. 국가와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를 포함한 전기관련 기술 등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위원회는 전임회장, 회장, 차기회장, 정부 기관의 정책 책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5조(회의 및 의견 청취 기능)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8월 1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제정)

재무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재정 및 회관 준비를 운영하기 위하여 재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2023.10.13 개정]

제2조(일반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2021.11.12. 개정] [2023.10.13 개정]

1. 학회 자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및 적립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회 일반 회계에 관한 사항
4. 기타사항

제3조(간접비) ① 각종 학술행사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본부에 납부한다. [2023.10.13 개정]

1. 과총 지원금을 받는 모든 학술행사는 잉여금의 20%를 본부에 납부
2. 계산서 발급(등록비 제외)하는 모든 학술행사는 10%의 오버헤드를 본부에 납부

제4조(회관준비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023.10.13 개정]

1. 회관 준비를 위한 부지 확보 및 건축 등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회관 준비에 관련된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3. 회관 준비를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사용 등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4. 회관 준비 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학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타 회관 준비(매매, 신축, 개축, 증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①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회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관 매매 및 부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설계업자 및 설계도 선정에 관한 사항
3. 시공사 선정에 관한 사항
4. 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공사 진행 중 중요한 설계 변경 및 1억원 이상의 계약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회관 준비(매매, 신축, 개축, 증축 등)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학회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보고하고, 학회 이사회와 평의원회는 보고사항 중 중요 사항의 변경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 부위원장은 차기회장으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평의원 자격을 보유한 전임회장, 학회 총무이사, 재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021.11.12., 2023.10.13, 2023.12.08 개정]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23.10.13 개정]

제6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회 재무이사가 겸한다. [2021.11.12. 개정]

제7조(자문위원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회관 준비(매매, 신축, 개축, 증축 등)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법률, 건축 등)이 있는 자를 자문위원 등으로 둘 수 있다. [2023.10.13 개정]

② 자문위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2023.10.13 개정]

제8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21.11.12. 개정] [2023.10.13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기획정책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의 각종 기획 및 장기발전 방향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01.09, 2021.11.12 개정]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1.11.12 개정]

1. 각종 기획 및 정책 [2004.01.09 개정]
2. 장·단기 발전 방향
3. 부문회, 부회, 위원회, 전문위원회 설치 및 승격사항 검토 [2024.03.08 개정]
4. 기타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기회장, 부위원장은 기획정책 이사 중에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04.01.09, 2021.11.12, 2023.12.08 개정]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12 개정]

제5조(회의) 위원회는 격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21.11.12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4년 1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4년 3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소통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각종 업무의 전산화와 정보 관리 및 회원 교류의 디지털화를 통해 학회 홍보와 회원간 소통 증진을 담당하는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 업무 전산화 및 제반 기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관리, 보안 업무
2. 학회 및 학술 대회 홍보와 언론 대응 업무
3. 학회 구성원들간 소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기획 및 운영
4. 학회와 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및 디지털 출판 기획 및 운영
5. 기타 학회 소통위원회의 취지에 합당한 사업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회 소통이사 중에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위임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회원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원관리 및 회원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회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1.11.12 개정]

1. 신규 가입 회원의 회원 자격 적격 여부
2. 신규 회원의 확보 및 기존 회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원의 자격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회원교육이사 중에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04.01.09, 2021.11.12, 2023.12.08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12 개정]

제5조(시니어 회원 심의분과 구성, 업무, 심의절차, 심사기준, 혜택) [2010.02.05 개정]

- ① 시니어 회원 심의분과는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부문회에서 추천한 1인의 시니어 회원으로 구성하고,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21.11.12 개정]
- ② 시니어 회원 심의분과는 시니어 회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 ③ 시니어 회원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니어 회원 신청자는 정회원으로 연속 7년 또는 전체 10년이 경과한 회원 중에서 전기공학 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회원으로서 시니어 회원 심의분과 회의 개최 월 1일까지 시니어 회원 신청서(별표1)와 3인 이상의 시니어 회원(또는 펠로우 회원)의 시니어 회원 추천서(별표2)를 당 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기공학 분야에 기여한 공적이란 학문, 교육, 연구개발, 봉사, 산업계 등에 나타난 실적을 말한다. [2017.11.10 개정]
 2. 시니어 회원 심의분과회의는 매년 5월, 10월 4번째 금요일에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본부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 ④ 시니어 회원 심사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에 없는 공헌 실적에 대하여서는 기타 사항에 의거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단, 정회원으로 외부에서 시니어 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심사 기준과 별도로 인정받은 증빙 서류로 대체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010.05.14 개정]
- ⑤ 시니어 회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시니어 회원증과 핀 제공
 2. 학회 관련지 등에 시니어 회원 문구 표기
 3. 시니어 회원 심의분과 위원 심의자격

제6조(펠로우 회원 심의분과 구성, 업무, 심의절차, 심사기준, 혜택) [2010.02.05 개정]

- ① 펠로우 회원 심의분과는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부문회에서 추천한 1인의 펠로우 회원으로 구성하고,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21.11.12 개정]
- ② 펠로우 회원 심의분과는 펠로우 회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 ③ 펠로우 회원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펠로우 회원 추천 자격은 학회 임원을 제외한 제3자에 한하며, 추천자는 펠로우 회원 추천서(별표 4)와 펠로우 회원 심의분과 소속이 아닌 5명의 펠로우 회원의 펠로우 회원 추천 의견서(별표 5)를 인비로 작성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된 서류는 해당 부문회 이사회의 심의 후, 그 심의 내용을 펠로우 회원 심의분과 회의 개최 2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12, 2021.11.12 개정]

2. 펠로우 회원 대상자는 시니어 회원으로 연속 5년 또는 전체 8년이 경과한 회원 중에서 전기공학 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여기서, 전기공학 분야에 기여한 공적이란 학문, 교육, 연구개발, 봉사, 산업계 등에 나타난 실적을 말한다.
3. 영펠로우 회원은 이 규정 제6조 제③항 제2호와는 별도로 제6조 제③항 제1호의 추천서(별표 4)와 학회 봉사 실적(5년 이상의 학회 또는 부문회 임원이나 위원 활동)만으로 펠로우 회원 대상자가 된다. [2019.04.12 신설, 2021.11.12 개정]
4. 펠로우 회원 심의분과 회의는 매년 10월 3번째 금요일에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를 하고, 펠로우 회원 심의 내용을 11월 본부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 ④ 펠로우 회원 심사 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에 없는 공헌 실적에 대하여서는 기타 사항에 의거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단, 정회원으로 외부에서 펠로우 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6의 심사 기준과 별도로 인정받은 증빙 서류로 대체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010.05.14 개정]
- ⑤ 펠로우 회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펠로우 회원증과 핀 제공
 2. 학회 관련지 등에 펠로우 회원 문구 표기
 3. 펠로우 회원 심의분과 위원 심의자격

제7조(영펠로우 회원 심의분과 구성, 업무, 심의절차, 심사기준, 혜택) [2017.11.10 신설, 2019.04.12 개정]

- ① 영펠로우 회원 심의분과는 당연직으로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두며, 각 부문회에서 추천한 1인의 펠로우 회원으로 구성하고,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17.12.08, 2019.04.12, 2021.11.12 개정]
- ② 영펠로우 회원 심의분과는 영펠로우 회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2019.04.12 개정]
- ③ 영펠로우 회원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2019.04.12 개정]
 1. 영펠로우 회원 대상자는 시니어 회원으로 5년이 경과한 회원 중에서 전기공학 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여기서, 전기공학 분야에 기여한 공적이란 학문, 교육, 연구개발, 봉사, 산업계 등에 나타난 실적을 말한다. 또한 세부 전공분야 상위 30%(인용빈도기준) 내외의 국제 저명 학술지에 주저자 또는 연락처자로 3편 이상 게재한 회원이어야 한다. [2019.04.12 개정]
 2. 영펠로우 회원 추천자는 영펠로우 회원 추천서(별표 7)와 영펠로우 회원 심의분과 소속이 아닌 펠로우 회원 3인의 영펠로우 회원 추천 의견서(별표 8)를 인비로 작성하여 해당년도 9월 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된 서류는 해당 부문회 이사회의 심의 후, 그 심의내용을 영펠로우 회원 심의분과 회의 개최 2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12, 2021.11.12 개정]
 3. 영펠로우 회원 심의분과 회의는 매년 10월 중에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를 하고, 영펠로우 회원 심의 내용을 11월 본부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2019.04.12, 2021.11.12 개정]
- ④ 영펠로우 회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2019.04.12 개정]
 1. 영펠로우 회원증과 회원패 제공 [2019.04.12 개정]
 2. 펠로우 회원 승격 요건 우대 [2019.04.12 개정]

제8조(명예 회원 심의절차, 혜택) [2009.03.13 개정]

- ① 명예 회원 안건은 본부 이사회에서 심의결정 한다. [2021.11.12 개정]
- ② 명예 회원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명예 회원 추천 자격은 본인을 제외한 제3자에 한하며, 추천자는 명예 회원 추천서(별표 7)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2021.11.12 개정]
 2. 접수된 명예 회원 추천은 매년 6월 본부 이사회에 상정하여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도록 한다. [2021.11.12 개정]
- ③ 명예 회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명예 회원증과 핀 제공

2. 학회 관련지 등에 명예 회원 문구 표기

3. 학회비 면제

제9조(원로 회원, 혜택) [2014.05.09 신설]

① 원로 회원은 65세 이상 회원으로서 20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회원으로 한다.

② 원로 회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연회비 면제 [2021.11.12 개정]

2. 학회 주관 모든 학술대회 등록비 면제(현장 무료 등록 및 만찬 제공)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니어 회원 심의분과 및 펠로우 회원 심의분과, 영펠로우 회원 심의분과의 회의는 위원회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2010.02.05, 2021.11.12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04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년 3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4년 5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6년 1월 15일 폐지한다.
6.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부활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전기공학교육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전기공학 교육 분야의 교육제도, 교과과정 및 교육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공학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1.11.12 개정]

1. 전기공학 분야의 교육에 관한 업무
2.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의 심의 조정 및 의결 [2021.11.12 개정]
3. 기타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회원교육이사 중에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05.04.08, 2021.11.12, 2023.12.08 개정]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12 개정]

제5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21.11.12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05년 4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회지, 논문지(국문논문지 및 영문논문지)를 발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업무) ① 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 기획 수립, 투고 기사 심사 및 평가,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학회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회지 편집규정”에 정한다. [2021.11.12 개정]

② 위원회는 논문지 발행에 대한 업무를 국문편집위원회 및 영문편집위원회 등의 관련 편집위원회에 위임하고, 다만 기본 방침 수립 및 조정 역할을 한다. 논문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문논문지 및 영문논문지 편집규정”에 정한다. [2012.11.09, 2021.11.12 개정] [2022.12.9 개정]

③ (용어의 정의) 관련 편집위원회라 함은 학회지 편집위원회, 국문논문지 편집위원회, 영문논문지 편집위원회를 말한다. [2012.11.09. 개정] [2022.12.9 개정]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련 편집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보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부문회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21.11.12, 2022.12.9, 2023.12.08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선정 및 자격) 위원은 관련 위원회 전문가 3인의 추천 또는 부문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으로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은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2021.11.12. 개정] [2022.12.9 개정]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 직급 이상의 자로서,
2. 국내외 학술지에 15편 이상 또는 SCI 등재 논문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제6조(회의) 위원회는 매월 1회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위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21.11.12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196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 이 규정은 1971년 1월 2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73년 7월 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79년 2월 1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86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87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1994년 4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01년 12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04년 1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12년 1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7. 이 규정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8.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회지를 발행하기 위한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 제2조(업무)** 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 기획 수립, 투고 기사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세부 사항은 “학회지 편집규정”에 정한다. [2021.11.12 개정]
-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 중 간사를 둔다. [2021.11.12, 2023.12.08 개정]
- 제4조(위원 선정 및 자격)**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 및 각 부문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21.11.12, 2023.12.08 개정]
- 제5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3년이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21.11.12 개정]
- 제6조(회의)**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 매체를 이용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의 정족수는 위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21.11.12., 2023.12.08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국문논문지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국문논문지(전기학회논문지, 이하 “국문논문지”라 한다)를 발행하기 위한 국문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 제2조(업무)** 위원회는 국문논문지의 발간 기획 수립,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021.11.12. 개정]
-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 중 간사를 둔다. [2021.11.12, 2023.12.08 개정]
- 제4조(위원 선정 및 자격)** 위원장은 본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부문회 별로 약간 명의 위원을 동수로 각 부문회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고 위원장의 제청으로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 제5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3년이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 제6조(전문분과)** 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전문분과(TF팀)를 둘 수 있다. 각 전문분과는 부여된 활동이 완료된 후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3.11.10. 신설]
- 제7조(회의)**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 매체를 이용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회의의 정족수는 위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영문논문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의 영문논문지를 발행하기 위한 영문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업무) 위원회는 영문논문지의 발간 기획 수립,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021.11.12 개정]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 중간사를 둔다. 단, 필요한 경우는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2006.10.13, 2021.11.12, 2023.12.08 개정]

제4조(위원 선정 및 자격)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21.11.12, 2023.12.08 개정]

제5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3년이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06.10.13, 2021.11.12 개정]

제6조(회의)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 매체를 이용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회의의 정족수는 위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06.10.13, 2021.11.12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하계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와 같은 종합 학술대회를 기획, 진행, 관리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업무) 위원회는 종합 학술대회 개최 일정 및 장소 결정, 학술 논문 접수 및 심사, 대회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기타 종합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021.11.12 개정]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 학술이사 중에서 보하고, 부위원장은 학술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회원 중에서 보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14.01.09, 2021.11.12, 2023.12.08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학술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21.11.12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199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4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연구조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전기공학 전분야의 학술 및 그 응용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001.04.13, 2021.11.12 개정]

1. 학술연구 용역사업
2. 전문분과TF의 신설, 폐지 및 활동 범위 결정 [2024.03.08 개정]
3. 출판사업, 워크숍, 세미나 및 교육강좌 개최 및 운영 [2021.11.12 개정]
4. 국내외 연구기관, 산업체, 단체 등과의 기술정보 및 인력 교류
5.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공동연구 및 발표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추진
6. 현장 견학회 개최
7.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의 심의 조정 및 의결 [2021.11.12 개정]
8. 기타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회 사업이사 중에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04.01.09, 2021.11.12., 2023.12.08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12 개정]

제5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전문분과TF) 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전문분과TF를 둔다. 각 전문분과TF는 부여된 연구조사 활동이 완료된 후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1.11.12, 2024.03.08 개정]

제7조(회의)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21.11.12, 2023.12.08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199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기존 「기술조사전문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3.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99년 3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01년 14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02년 14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8. 기존 「산학협동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 개정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9. 이 규정은 2004년 1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4년 3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국제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 기술, 정보 교류 및 국제학술행사 등의 제반 국제 협력 활동을 기획, 진행, 관리, 지원하며 국외의 학회 회원의 학술활동 및 상호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1.11.12 개정]

1. 학회에서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 기술 및 정보 교류에 관련된 기획, 진행, 관리, 지원 업무 [2021.11.12 개정]
2. 학회에서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 학술행사에 관련된 기획, 진행, 관리, 지원 업무 [2021.11.12 개정]
3. 국외의 학회 회원의 학술활동 및 상호교류에 대한 지원 업무 [2021.11.12 개정]
4. 기타 학회에서 주관하는 제반 국제 협력활동의 지원업무 [2021.11.12 개정]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회 국제이사 중에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04.02.13, 2021.11.12, 2023.12.08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제5조의 분과별로 분과위원을 위촉하여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1.11.12 개정]

제5조(분과) 위원회는 국제 교류 대상 국가에 따라 담당 분과를 둔다. [2021.11.12 개정]

제6조(회의)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21.11.12, 2023.12.08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1997년 5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99년 3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4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산학협동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산학연 협동의 연구 및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1.11.12 개정]

1. 산학연 친선 교류사업
2. 산학연 협동 세미나 및 연구발표
3. 산학연 공동 연구 기획 및 추진
4. 산업체 시찰
5. 기타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회 산학협동이사 중에서 보고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21.11.12, 2023.12.08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06.02.10, 2021.11.12 개정]

제5조(분과)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2021.11.12 개정]

제6조(회의) 위원회는 년 2회 개최하고,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결정에 따른다. (친선교류가 목적이므로 의결 정족수는 따로 정하지 않음) [2006.02.10, 2021.11.12, 2023.12.08 개정]

제7조(산학협동간사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산학협동 간사회(이하 “간사회”라 칭함)를 둔다. [2006.02.10 신설, 2021.11.12 개정]

1. 간사회는 총무 간사 및 운영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의결한다. [2021.11.12 개정]
2. 운영 위원 및 총무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2021.11.12 개정]
3.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2023.12.08. 개정]
4. 안건 의결은 운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결정에 따른다.
5. 운영소위의 모든 결정 사항은 정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06년 2월 10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전기기술표준 및 용어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전기공학 관련 분야 기술 표준 및 전문 용어 표준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그룹의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장기적인 운영 전략 로드맵 및 표준화 기관과의 협력
2. 국내 단체표준, KS 산업표준과 국제 표준(IEC), 전기설비기술기준(KEC포함) 등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지원
3. 전기공학 관련분야 학술 및 실무에 적용되는 전문용어 표준화 및 표준용어의 제정/보급
4. IEC TC/WG,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산자원부 등의 표준 관련 위원회 참여 지원
5. 관련 산업체 제품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참여를 위한 기술 표준 및 시험 기술 지원
6. 표준 및 표준정책 도출을 위한 산학협동사업 지원
7. 기타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 간사와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추천하고, 부위원장과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23.12.08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승인을 받아 전문분야 소위원회 또는 분과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우선적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분과를 상시 또는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분과위원은 해당 부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년 3회~4회 정기 개최하고,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 전문분야 소위원회 및 분과 회의는 관련 부위원장이 위원장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04년 2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용어위원회 규정을 전면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여성과학기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학회 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1.11.12 개정]

1. 국내외 전기 분야 여성 과학기술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
2. 각종 학술 활동 정보 지원 및 참여 확대
3.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젝트를 통한 친목 도모, 상호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교류 확대에 취업, 진로상담 등 여성 지위 향상 노력
4. 전기 관련 여성 과학기술인 국가 정책 제언 및 활동 지원
5. 전기 관련 여성 과학기술인의 산학연관의 교류 활성화 지원
6. 기타사항 - 필요 사항의 개발 및 추진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회 사업이사 중에서 보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21.11.12, 2023.12.08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12 개정]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며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는 2명까지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분과)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분과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2021.11.12 개정]

제8조(회의) 위원회는 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결정에 따른다. [2021.11.12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전기에너지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전기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2022.11.11 개정]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1.11.12 개정]

1. 전기에너지정책의 연구 및 방향 제시 [2022.11.11. 개정]
2. 정책보고서 발간 및 정책포럼 개최 [2022.11.11 개정]
3. 정부 및 관련기관, 산업계와의 정책, 기술정보의 교환 [2021.11.12 개정]
4. 기타 위원회의 취지에 합당한 사업 [2021.11.12 개정]
5. 기타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위원장과 부문회장이 추천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21.11.12., 2022.11.11., 2023.11.10., 2023.12.08 개정]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12. 개정] [2022.11.11. 개정]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22.11.11. 개정 / 2023.11.10. 개정]

제6조(워킹그룹)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며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하부조직으로 워킹그룹을 둘 수 있다. [2022.11.11. 개정]

제7조(회의)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21.11.12. 개정] [2022.11.11.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1일부터 전력정책위원회 규정을 전면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전기역사 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 소속 전기역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칭한다. [2021.11.12, 2024.03.08 개정]

제2조(목적) 위원회는 학회의 규칙 제7장 제20조에 따라 회원 상호간 협조를 통하여 전기역사의 연구, 조사, 기록 및 보존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1.11.12 개정]

1.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의 심의, 조정 및 의결 [2021.11.12 개정]
2. 기타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자문위원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추천 하고, 부위원장, 자문위원과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21.11.12, 2023.12.08 개정]

제5조(임기) 모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의해 중임할 수 있다. [2021.11.12 개정]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12 개정]

제7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원) 위원회의 회원은 학회의 회원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이 된다. [2021.11.12 개정]

제9조(회의)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21.11.12, 2023.12.08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기타 위원회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운영 세칙에 준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4년 3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ICEE 한국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ICEE에 관련된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ICEE와 관련하여 해외 전기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며, ICEE의 발전을 도모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1.11.12 개정]

1. 학회 주최의 ICEE에 대한 기획, 진행, 관리, 지원업무 [2021.11.12 개정]
2. 해외 전기학회 주최의 ICEE에 대한 논문 투고의 장려, 논문의 심사, 강연 및 세션 구성의 지원 및 협력
3. ICEE에 관련된 해외 학회와의 정보 교류.
4. ICEE 국제협의회(가칭)의 활동 지원.
5. ICEE 국내 기금의 관리, 운영.

제3조(구성) 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학회 국제이사 중에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4.01.09, 2021.11.12, 2023.12.08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12 개정]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위원장이 학회 국제이사일 경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010.12.17, 2021.11.12 개정]

제6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21.11.12 개정]

제7조(ICEE 대표단) ICEE 대표단 구성은 회장, ICEE 한국위원장, Keynote speaker, 부문회 회장 등 총 5인으로 함. [2011.01.14 신설, 2021.11.12. 개정, 2023.02.10.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4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1년 1월 1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ICEMS 한국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전기학회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 부문회(이하 “부문회” 라 한다)의 ICEM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Machines and Systems)에 관련된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ICEMS와 관련하여 해외 전기 관련 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며, ICEMS의 발전을 도모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10.16 개정]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 주최의 ICEMS에 대한 기획, 진행, 관리, 지원 업무
2. 해외 전기 관련 학회 주최의 ICEMS에 대한 논문 투고의 장려, 논문의 심사, 강연 및 세션 구성의 지원 및 협력
3. ICEMS와 관련된 해외 전기 관련 학회와의 정보 교류
4. ICEMS 국제협의회(가칭)의 활동 지원
5. ICEMS 국내 기금의 관리, 운영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 부문회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부문회 국제이사 중에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0.10.16, 2023.12.08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위원장이 국제이사일 경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016.01.15 개정]

제6조(회의)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7조(JICEMS) ① 본 위원회는 한·중·일 3개국 ICEMS 위원회의 합의 하에 ICEMS 발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별하여 JICEMS(영문논문지)를 계간으로 발간하기로 하고, JICEMS 한국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2011.05.13 신설, 2012.09.14 개정]

② JICEMS 한국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11.05.13 신설, 2012.09.14, 2023.12.08 개정]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2년 9월 1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6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EMTP 한국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 본부 산하 EMTP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학회의 정관 및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라 회원 상호간 협조를 통하여 EMTP 관련 외국과의 정보 교환과 국내 과도현상 해석 분야의 연구, 조사 등의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의 심의, 조정 및 의결
2. 기타 사항

제4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자문위원 약간 명,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23.12.08 개정]

제5조(임기)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의해 중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원) 본 위원회의 회원은 학회의 회원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이 된다.

제9조(회의) 본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23.12.08 개정]

부 칙

1. 본 규정은 본부 이사회에서 승인된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기타 위원회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운영 세칙에 준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CMD 한국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본 학회” 라 한다)의 CMD(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dition Monitoring and Diagnosis)에 관련된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CMD와 관련하여 해외 전기 관련 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며, CMD의 발전을 도모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 주최의 CMD에 대한 기획, 진행, 관리, 지원 업무
2. 해외 전기 관련 학회 주최의 CMD에 대한 논문 투고의 장려, 논문의 심사, 강연 및 세션 구성의 지원 및 협력
3. CMD와 관련된 해외 전기 관련 학회와의 정보 교류
4. CMD 국제협의회(가칭)의 활동 지원
5. CMD 국내 기금의 관리, 운영
6. CMD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참여 지원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전기물성·응용부문회장이 위촉한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부문회 국제이사 중에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3.12.08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위원장이 국제이사일 경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7조(특별 논문지 발간) 본 위원회는 한·중·일 3개국을 중심으로 한 CMD Steering Committee의 합의 하에 CMD 발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별하여 본 학회의 영문지, 또는 논문지에 특별 호(special issue)로 발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한국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APAP 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 부문회(이하 “부문회” 라 한다)의 APAP(Advanced Power System Automation and Protection)에 관련된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APAP와 관련하여 해외 단체와 교류를 추진하며, APAP의 발전을 도모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APAP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1.11.12 개정]

1. 부문회 주최의 APAP에 대한 기획, 진행, 관리, 지원 업무 [2021.11.12 개정]
2. 해외 단체 주최의 APAP에 대한 논문 투고의 장려, 논문의 심사, 강연 및 세션 구성의 지원 및 협력
3. APAP와 관련된 해외 기관 학회와의 정보 교류
4. APAP 국내 기금의 관리, 운영

제4조(구성) 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전력기술 부문회장이 위촉한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관련 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1.11.12., 2023.12.08., 2024.01.12 개정]

제5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12 개정]

제6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021.11.12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전기학회 교육원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 (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정관 제4조(사업) 1항3호(학술대회, 강연회의 개최)에 의하여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규칙 7장 20조의 교육원 (이하 “본 원”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원의 명칭은 ‘대한전기학회 교육원’이라 칭한다.

제3조(업무) 본 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강좌 접수 및 개설, 운영, 관리
2. 교육 사업 심의 조정 및 의결
3.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 운영
4.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및 관리
5. 기타 타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교육 관련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교육원은 제3조(업무)의 효율성과 영속성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를 연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원장과 부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각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23.11.10. 개정]

제5조(원장) 원장은 교육원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원장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7조(교육강좌 개설) 교육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자는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학회 양식에 의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 의결 후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

제8조(교육강좌 수강 신청 및 취소) 교육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며, 교육개시 2일전 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담은 7일전 취소 10%, 당일 취소 20%로 한다.

제9조(교육 강좌 운영) 교육 강좌 운영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자격 : 대한전기학회 정회원
2. 교육방향 :
 - 회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본 학회의 사회적 역할 및 학문 방향 제시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기공학 핵심역량 교육
 - 창의융합형 강좌를 위한 인문, 사회, 과학기술 융합교육
 - 기타 대한전기학회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제반 교육

3. 기본운영 : 강의실을 고려하여 수강생 3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단, 10인 미만은 미개설)

제10조(교육비 및 인센티브) 교육비는 교육일정, 내용, 등록비를 고려하여 교육 강좌 개설을 신청한 대표교수가 정하며, 교육 종료 후 최종 정산 잔액의 50%를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강사진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다. (단,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1조(수료증 발급) 교육 강좌 80%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학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12조(세부지침) 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장학생 선정 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전국 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장학생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선출직 부회장 3인,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장학금 기탁업체 대표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2023.12.08 개정]

제3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위임포함)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장학생 자격 및 선발) 장학생 선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의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제출서류 원본은 서면으로 받고, 선발 후보자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추천자로부터 보충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①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학생은 신청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교 3, 4학년 재학생 또는 전문대학 졸업 직전년도 재학생으로 최소 전공 3과목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 전력공학(송배전공학, 발변전공학), 전기기기, 자동제어(전기제어), 전기설비, 전기재료, 전력전자, 전기에너지, 신재생에너지(명칭이 상이한 것은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함.)
2. 품행이 바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3. 전기공학 관련 분야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학교 및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자(단, 100만원 이하의 장학금 수혜자는 신청 가능)

② **제출서류**

1. 해당 학교 추천 공문 1부(학교 자체 양식)
2. 수혜 지원서 [서식 1], 서약서 [서식 2] 각 1부
3. 직전 2개 학기 성적증명서
4. 관련 교수의 추천서 [서식 3] 및 평가서 [서식 4]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수혜자 통장 사본 1부
7. 해당연도 1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서
8.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서식 5]

③ **선발일정**

1. 4월 말 공고
2. 5월 말 접수
3. 6월 중 심의 선정 및 통보

제5조(선정) 위원회는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장학생을 선정한 후 본부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해당 연도 해당자가 없다고 판정 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수상의 제한)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장학금을 수혜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취소 및 반환 요청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기술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 및 기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문/기술 분야 별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부문회 기술위원회의 설치/변경 신청 검토 및 조정
2. 부문회 기술위원회 산하 WG/TF 설치 조정 및 승인
3. 기타 기술위원회의 취지에 합당한 사업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회 기술이사로 보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 추천 위원과 부문회 회장 추천 위원(부문회 동수)을 포함하도록 구성하며 본부 이사회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협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술위원회 설치/변경 신청 검토 절차) 협의회는 기술위원회 설치/변경 신청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협의회는 기술위원회 설치/변경 신청 검토를 위한 회의 2주일 전까지 신청 사항을 모든 위원과 부문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검토 회의에서 타부문회 동기가 확인된 경우, “기술위원회 설치를 위한 부문회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3. 타부문회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술위원회 명칭, 범위 등을 해당 부문회와 조정할 수 있다. 조정 기간은 회의 시작일 기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정 완료 및 조정 기간 경과 후 해당 기술위원회 신청 사항에 대한 이사회 상정을 의결한다.

제8조(WG/TF 설치 조정 절차) 협의회는 기술위원회 산하 WG/TF 설치 신청에 대한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협의회는 WG/TF 설치 검토를 위한 회의 2주일 전까지 설치 구비 서류를 모든 위원과 기술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회의 전까지 의견을 회신받도록 한다.
2. WG/TF 설치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WG/TF 명칭, 범위 등을 해당 기술위원회와 조정할 수 있다. 조정 기간은 회의 시작일 기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정 완료 및 조정 기간 경과 후 WG/TF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KIEE CEO 클럽 규정

제1조(명칭) 전기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영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전기분야 미래비전과 학술적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산업계와 학계간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킹하는 그룹으로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산하 KIEE CEO 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전기산업 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클럽을 본 학회 내에 설치하고, 본 클럽의 발전을 도모함을 위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클럽 회원에게 적용되며, 본 학회의 정관, 규칙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업무) 본 클럽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KIEE CEO 클럽 포럼 정례 개최
2. 전문 워크숍 및 기술 교류회 개최
3. 클럽 및 학회 회원간의 친선 교류회 개최
4. 전문인력양성 및 장학사업
5. 전기산업 및 학회 발전을 위한 각종 진흥활동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학회 및 클럽의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 ② 회원은 클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③ 회원은 학회, 클럽, 타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④ 회원은 사례, 증여, 향응 제공 및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⑤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회 및 클럽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 ① 전기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및 개인으로서 전기산업 진흥에 공헌한 자는 클럽의 회원후보자 자격을 가진다.
- ② 기업 회원사는 ① 항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로 하며, 클럽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기업 정회원사 자격을 가진다. 기업 정회원사는 해당 기업 또는 단체의 대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대표는 기업 회원사의 대표이사 혹은 전기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정회원은 ②항에 의해 지정된 기업 또는 단체의 대표, ①항에 의거 클럽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정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학회 정회원이 되며, 당해년도 연회비는 면제된다.
- ④ 명예회원은 현직에서 퇴직한 정회원 중 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클럽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⑤ 특별회원은 전기 관련 국공립 연구소 및 정부 부처 등의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와 학회 특별회원사에 소속된 자, 학회와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학회 본부의 산학협동이사 및 학회 임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 ① 회원의 가입은 클럽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 ② 회원의 가입에 관한 승인 의결은 서면,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 의사를 서면,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클럽의 목적과 회원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자격정지 및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입기 및 회비)

- ① 회원의 입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다.
- ③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위원회)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는 당해년도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① 위원장은 학회의 산업계 (차기)회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학회장이 임명한다.
 - ② 부위원장과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학회 본부의 산학협동이사 1명을 부위원장에 보한다.
 - ③ 클럽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의결시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당해년도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4.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심의와 의결을 통해 승인하며,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장)이 결정한다.
 - ① 신규회원 승인, 회원 자격정지 및 제명
 - ② 클럽 규정의 개정 및 세부 내규 제정
 - ③ 클럽 회비(입회비 및 연회비) 지정
 - ④ 클럽 및 분과의 각종 사업시행 및 예산지원에 관한 승인
 - ⑤ 전문 부문별 분과 구성, 분과위원장 임명, 분과위원 선임에 관한 승인
 - ⑥ 기타 클럽 및 분과 전반의 제반 업무 승인

제11조(분과)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이 전문 부문별 분과(이하 “분과”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① 각 분과는 당해년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별 호선으로 임명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③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분과위원을 선임하고 담당 분과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④ 정회원은 분과위원으로 활동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